# 119구조·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조은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751

발의연월일: 2024. 8. 12.

발 의 자: 조은희ㆍ이성권ㆍ박정하

신성범 · 서지영 · 이달희

최수진 • 이만희 • 김상욱

정동만 · 김용태 의원

(11인)

####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재난 발생 시 인명의 탐색·구조, 사상자에 대한 응급처치 및 의료기관으로의 이송 등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구조활동을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, 재난현장에서 응급환자를 의료기관에 이송하는 경우 의료기관 간 이동 등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어 가족 등이 위치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없어 이의 개선이 필요함.

이에 소방청장등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의료기관 등으로 이송된 응급환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여 이송정보를 체계적으로 하 고자함(안 제22조의2).

#### 법률 제 호

## 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119구조 · 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2조의2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전단 중 "이송환자의 수"를 "응급환자의 성명, 연락처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렁으로 정하는 사항"으로, "해당 의료기관에"를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"로 하며, 같은 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후단 중 "의료기관"을 "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장"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소방청장등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5조에 따른 응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른 정보를요청할 수 있다.

### 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제22조의2(이송환자에 대한 정보 수집) 소방청장등은 구급대가 수집) ① ------응급환자를 의료기관으로 이송 -----응급환자의 성명, 연락 한 경우 이송환자의 수 및 증 상을 파악하고 응급처치의 적 처, 주소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절성을 자체적으로 평가하기 정하는 사항-----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해당 의료기관에 주된 증상, 사망여 부 및 상해의 경중 등 응급환 자의 진단 및 상태에 관한 정 건복지부장관 또는 해당 의료 보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기관의 장에게-----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정당 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 건복지부장관 또는 의료기관의 ② 소방청장등은 「응급의료에 <신 설> 관한 법률 | 제15조에 따른 응 급의료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보 건복지부장관에게 제1항에 따 른 정보를 요청할 수 있다.